

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3-11호〉 2023년 8월 10일

정책/제도

AI 규제법 도입에 따른 국제사회의 동향

■ 개요

- 생성형 AI의 본격적인 활용으로 인공지능의 적용 빈도와 범위가 높아짐에 따라, 인류 역사상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의 규제를 위한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논의 중. 유럽은 AI의 창작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EU에서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
- 미국의 경우에는 알고리즘 책임 법안이 2019년에 이어 2022년도에 발의된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여 AI 규제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 중. 대체로 이슈화되고 있는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안전과 윤리, 공정성 등에 있어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난 2월 인공지능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나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인 규제를 담지 못하였다는 비판
- 현재 SW진흥법과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인공지능의 개발을 촉진하는 관련법들은 활발하게 제정되고 있으며, 인공 지능의 기반이 되는 SW사업의 활성화와 정보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 이처럼 인공지능 개발 촉진을 위한 제정은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반면, 인공지능의 법적 규제화는 그에 비해 미미하여 규제를 위한 관련 법안의 마련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본격적인 논의와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SW진흥법은 SW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SW 역량을 강화하고 SW를 통한 인공지능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법률이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반영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주요내용

1. AI 문제점에 따른 법적 규제 의 필요성

- 인공지능은 이미 현대 사회의 여러 분야에 걸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성형 AI인 챗GPT의 등장으로 일상생활에서도 그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본격적인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의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공공 민원 콜센터 비서 서비스와 기업의 채용 면접 과정에서도 인공지능을 폭넓게 사용하는 등 사업적 측면과 더불어 교육적 측면에서도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도 환자의 진료에 활발히 활용 중
-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활발한 활용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은 미흡하여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공정성과 연관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다만 AI를 엄격하게 규제하게 되면 기술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규제화와 기술 혁신 사이에서 이익의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중요
- **(개인정보보호)** AI 시스템이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 최근 구글, 아마존, 애플 등 AI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챗GPT의 경우 다양한 정보를 학습하고 추론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법적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될 것으로 예상. 따라서 데이터 수집, 저장 및 전송 과정에서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유출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의 사용에 적절한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
- **(저작권)**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법적 권리를 AI와 인간 중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존 데이터를 학습 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AI의 특성상 AI가 만든 창작물일지라도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미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AI 관련 저작권 분쟁이 본격화된 상황이며, 국회에서는 AI 기술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AI 표기 의무화법’(이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 함)을 발의한 상태임. 그러나 AI가 만든 모든 저작권에 대해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우려

[그림1] 생성형 AI DALL-E로 그린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



*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0148#home>

- (공정성) 공정성에 관한 이슈로는 AI 면접에서의 문제점이 가장 부각되고 있음. 세부적으로는 우선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한 AI는 편향된 데이터 기반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공정한 채용을 위해 도입한 AI 채용 서비스가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됨. 실제로, 2014년부터 AI 채용 서비스를 개발해온 아마존에서는 과거 편향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도출된 자료들을 학습한 AI로 인해, 특정 직무와 관련하여 성 중립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 또한 AI 면접으로 지원자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나, 결과에 대하여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수차례 지적됨.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면접을 본 지원자가 탈락 사유를 문의할 경우 AI의 결정을 담당자 등이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원자들에게 설명하도록 안내하며 관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임

* AI 면접은 정확한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취업 준비생들 간에 “무조건 조커처럼 웃어야 한다”는 면접 요령이 퍼지고 있을 만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인력 채용처럼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 결정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

** AI 면접에서와 같이 편향과 차별적인 데이터 학습은 반복적인 불공정의 재생산을 낳고, 금융과 건강 등 주요 부분에서 특정 집단에게 기회나 자원을 불공정하게 할당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갖게 해 사회적 약자를 계속하여 취약한 위치에 처하게 하는 등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

2. EU 중심의 규제법 도입 현황

- EU는 21년도에 최초로 AI 규제 법안인 ‘인공지능에 관한 통일규범 (인공지능법)의 제정 및 일부 연합제정법들의 개정을 위한 법안(Proposal for a Regulation laying down harmoniz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이하 AI 법안)’을 발의. 이후 지난 6월 14일 회의를 통해 EU 전역에서 AI를 규제하는 법안 협상안을 가결하였으며, 현재 최종 확정을 위한 3자 협상을 진행 중. 협상안의 골자는 생성형 AI 개발업체의 콘텐츠 내 데이터 출처 표기의 의무화이며, AI 훈련에 활용된 정보(투명성)와 AI의 불법 콘텐츠 생성 방지의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윤리성)하는 등을 법안에 담음

* 공공장소에서 안면, 홍채 등 원격 생체 인식 금지, 성별·인종·종교 등 민감 정보를 사용한 생체 인식, 프로파일링이나 경찰의 예방 치안 활동 등 생체 인식과 관련한 활동을 모두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며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부분 중점으로 하여 법 규제화의 구체적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

[표1]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규제 논의 동향

주요국	추진 상황
유럽연합(EU)	- 인공지능 법안 (투명성,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거버넌스 등 일반 원칙과 의무 제시로 규제) - 사람의 안전, 생계, 권리에 위협이 되는 시스템 금지
미국	- 알고리즘 책임 법안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
일본	-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행정 지침
뉴질랜드	-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지침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 수행
프랑스	-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응한 개인정보 보호 실행계획
한국	-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 -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 (고위험 AI규제)

- 우선 21년도 법안의 주요 내용은 위험 기반 접근법에 따른 인공지능 규제와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위험 기반 접근법에 따른 인공지능 규제는 AI 규제 법안의 핵심적 체계에서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위험도에 따라 1) 수용 불가능한 위험, 2) 고위험, 3) 제한적 위험, 4) 낮은 위험의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각 위험 단계마다 차등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AI 규제 법안 초안을 마련함
- 23년도 6월 26일을 기준으로 발표한 AI 규제 법안에서는 인간 중심의 접근을 위한 것을 중점으로 하며 1) 인간에 의한 감독, 2) 기술적 견고성과

안전성, 3)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거버넌스, 4) 투명성, 5) 다양성 · 비차별성 · 공정성, 6) 사회 및 환경복지의 6가지 사항들을 AI가 준수해야 일반원칙으로 제시함

-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의 안전과 생계 및 권리에 명백히 위협이 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금지하고, 인공지능의 위험과 차별 문제에 관하여 그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 동시에 공정성(Fairness),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윤리의식(Ethics)(이하 FATE)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주요국 및 주요 기업에서 논의되며 구체화하고 있는 실정

* 이 중 투명성(Transparency)이란 인공지능으로부터 도출된 결과 값에 대해 인간이 그 과정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결과 도출에 사용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함을 뜻함. 인공지능은 수백만 개의 변수들이 상호작용하는 구조로 인간이 결과가 도출된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므로 인공지능의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투명성이 결여된다면 그 결과와 예측을 분석할 수 없어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게 됨. 따라서 인공지능 판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의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사용한 데이터 알고리즘 작동 방식에 대한 기본 정보도 함께 제공될 필요

- EU 의회가 세계 최초로 AI 법안을 통과시키며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유럽 대기업들은 EU의 AI 법안이 기업 경쟁력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음. 스탠퍼드 대학의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Human-oriented AI, HAI)’에서 공개한 ‘파운데이션 모델 공급자들은 EU AI 법 초안을 준수하는가?’ 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EU AI 법안이 규정한 것과는 달리 기업 대부분이 데이터 및 연산 기능의 주요 특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고, AI 학습을 위해 사용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나 하드웨어, 학습을 통해 배출된 결과물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고하며 법안의 핵심 요소인 투명성의 문제를 지적함
- 해당 보고서에서는 10개의 기업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분석한 결과 어떤 기업의 모델도 EU 법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대부분이 데이터 저작권, 위험 완화, 평가 등의 영역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음. 보고서는 파운데이션 모델 제공 기업들의 저작권, 에너지(환경보호), 위험에 관한 평가에 대한 요구 사항 준수는 특히 열악하지만 이는 개선할 수 있는 영역으로 공급자는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산업 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

[그림2] EU AI 법안 초안에 대한 파운데이션 모델 공급자들의 규정 준수 Grading Foundation Model Providers' Compliance with the Draft EU AI Act

Source: Stanford Research on Foundation Models (CRFM), Institute for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AI)

	OpenAI	cohere	stability.ai	ANTHROPIC	Google	BigScience	Meta	AI21labs	ALPHA ALPHAI	EleutherAI	Totals
Draft AI Act Requirements	GPT-4	Cohere Command	Stable Diffusion v2	Claude	PaLM 2	BLOOM	LLaMA	Jurassic-2	Luminous	GPT-NeoX	
Data sources	●○○○	●●●○	●●●●	○○○○	●●○○	●●●●	●●●●	○○○○	○○○○	●●●●	22
Data governance	●●○○	●●●○	●●○○	○○○○	●●●●	●●●●	●●○○	○○○○	○○○○	●●○○	19
Copyrighted data	○○○○	○○○○	○○○○	○○○○	○○○○	●●○○	○○○○	○○○○	○○○○	●●●●	7
Compute	○○○○	○○○○	●●●●	○○○○	○○○○	●●●●	●●●●	○○○○	●○○○	●●●●	17
Energy	○○○○	●○○○	●●●●	○○○○	○○○○	●●●●	●●●●	○○○○	○○○○	●●●●	16
Capabilities & limitations	●●●●	●●●○	●●●●	○○○○	●●●●	●●●●	●●○○	●●○○	●○○○	●●○○	27
Risks & mitigations	●●●○	●●○○	○○○○	○○○○	●●●●	●●○○	●○○○	●●○○	○○○○	○○○○	16
Evaluations	●●●●	●●○○	○○○○	○○○○	●●●●	●●○○	●●○○	○○○○	●○○○	●○○○	15
Testing	●●●○	●○○○	○○○○	○○○○	●●○○	●●○○	○○○○	●○○○	○○○○	○○○○	10
Machine-generated content	●○○○	●●●○	○○○○	●●●●	●●●●	●○○○	○○○○	●●○○	●○○○	●○○○	21
Member states	●●○○	○○○○	○○○○	○○○○	●●●●	○○○○	○○○○	○○○○	●○○○	○○○○	9
Downstream documentation	●●○○	●●●○	●●●●	○○○○	●●●●	●●●●	●○○○	○○○○	○○○○	●●○○	24
Totals	25 / 48	23 / 48	22 / 48	7 / 48	27 / 48	36 / 48	21 / 48	8 / 48	5 / 48	29 / 48	

*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188993>

- 최근 미국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2019년에 이어 2022년에도 미국 상·하원에 각각 ‘알고리즘 책임법안(Algorithm Accountability Act of 2021)’ 이 발의됨. 미국 법안의 경우 공정한 AI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취지에서 EU 법안과 동일하나,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인공지능 규제에 초점을 둔 EU와는 달리 인공지능에게 책임성과 투명성을 부과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개발 및 배포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과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판이함. 또한, 미국은 올해 2월에 연방기관들이 공정성과 시민의 평등권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AI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법안을 마련하기에 앞서서 점차 규제를 위한 시동을 가하고 있음

*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용주는 개인의 고용 접근성과 가용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영향평가에서는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 대한 확인·설명, 개인정보 위험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에 대한 지원·수행, 안전장치 필요성 및 개발가능성에 대한 평가,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의 업데이트 유지 보관, 소비자의 권리 및 소비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완화 방안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우리나라는 지난 2월 7건의 법률안을 병합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 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비공개 상태지만 AI법 제정 방향에 대하여 AI 산업 육성과 AI 윤리 및 신뢰성 확보가 핵심적인 것으로 보임.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1) 인공지능에 대한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 적용, 2) 인공지능 분류 문제, 3) 규제 활용의 실용성, 4) 인공지능을

소관하는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것이며, 이는 소위안 제1조에 따르면 인공지능 산업법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국회에서 인공지능법안 외에도 인공지능 책임법도 발의하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 법률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제 11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출시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가 국민의 생명, 안전, 권익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그러나 해당 규제 내용에는 인공지능의 실질적인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되고 있으며 소위안이 규정하는 인공지능 윤리, 신뢰성 및 인공지능 사회에 대한 정의가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과기부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귀결됨. 특히 법안 내용 중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대한 위험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위 규정은 소위안 제1조의 목적에 크게 위배된다는 비판과 함께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인공지능도 우선 허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국제적 인권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존재

3. 인공지능 규제의 적용 분야

- 상기의 인공지능의 속성들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비해 볼 때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의료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사용이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상황
-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사회 내 자동차 사고를 큰 폭으로 감소시킬 것이 예측되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성화와 이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위한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2차례의 개정을 거쳐 2022년 1월 28일자로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시행중. 해당 법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그림3]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 출처: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367>

- 의료분야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사용은 머신러닝 기반의 이미지 인식을 통한 CT나 MRI 스캔에서 암 등의 질환 감지, 치료 방법 선택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여러 의료분야에서의 판독 오류를 줄이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다만 전문가들은 환자 데이터의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유출 등 인공지능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우려하고 있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가명처리 규정 및 데이터심의 위원회 운영을 법률로 정하여 규제를 통한 안전한 활용체계를 구축. 또한 활발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환자 동의서’로 일정 제약을 두어 의료기관이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 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 마련을 추진하는 등 기술이 저해되지 않도록 규제와 균형을 이루는 추세

[그림4] 인공지능기반 헬스 케어 서비스



* 출처: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64>

■ 시사점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AI에 대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공정성·책임성·투명성·윤리의식’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국가적·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한 의미에서 EU의 인공지능 규제법은 세계 각국의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내포
- EU가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며 인공지능 규제에 관해 선두에 자리하고 있으나, 각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EU의 규제를 수용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과 문제점을 초래. 실제로 EU가 아시아 국가들의 규제법 동참을 유도하고자 하는 실정이나 아시아 각국은 EU의 규제법을 따르는 것에 신중을 기하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중. 따라서 세계 각국은 AI 규제법 도입에 있어서 나라별로 AI의 기술 발전 속도와 활용도, 입법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히 도입할 필요
-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 많은 영역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간과 사회에 위협이 되거나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공정성과 연관된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부분에 관하여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 반면 그러한 규제법이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시킨다면, 인공지능이 현시점에서 가져다주는 혁신적이고 편리한 이점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거나 기술 발전을 차단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기관들은 반드시 무조건적인 규제나 기술 활용의 촉진을 위한 입법이 아닌 그 둘 간의 이익 균형을 잘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 또한, 당장의 규제만을 고려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법 도입을 견지할 때 비로소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
- AI규제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가이드라인 및 AI윤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므로 정부는 오는 9월에 간단한 가이드라인의 형식으로 기본 방향성을 담은 ‘디지털 권리 장전’을 발표할 예정. 위 가이드라인의 마련은 신기술에 대한 규제안이나 활용 방안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활발히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AI 규제의 정책 및 법안 발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 EU AI 법안이 주는 시사점

<https://journal.kiso.or.kr/?p=11212>

- EU AI 법안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전망

<https://journal.kiso.or.kr/?p=12227>

- 인공지능 규제정책과 인공지능법안의 쟁점

<https://blog.naver.com/koreareg/223153898294>

- AI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992>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개요 및 대응 법안

<https://www.k-risk.org/post/고학수-외-2인-2021-유럽연합-인공지능법안의-개요-및-대응-법안>

- 스탠퍼드大 “초거대 AI시스템 모델, EU규제 충족 못할 것”

<https://www.lawtimes.co.kr/news/188993>

- AI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법률안, AI 산업의 이정표

<https://www.etnews.com/20230516000007>

- “횡설수설했더니 낮은 점수“...’AI 면접관’ 실제로 만나보니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9270291i>

- 같은 듯 다른 유럽과 미국의 생성형 AI 규제 동향과 시사점

<https://www.itworld.co.kr/news/289363>

- ‘인공지능법’에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

<https://slownews.kr/88459>

-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9월 마련...새로운 디지털 질서 제시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545>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일,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3-12호> 발간일은 8월 25일입니다.